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 기획재정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기획재정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개 요	3
(1) 편성배경	3
(2) 주요내용	3
2. 기획재정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1)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5
(2)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6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안	7
(4)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5)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3. 검토의견	12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검토	12
(2) 한국은행 잉여금·전년도 세계잉여금	18
(3)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예비비 증액의 적절성 검토 필요	21
(4)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BIS 비율 및 손실률을 고려한 적정 출자규모 검토 필요	28
(5)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복권기금):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33
(6) 국고채 이자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과다편성된 예산안 감액 필요	39
(7) 지방채 인수(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 면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추경안 편성 필요	44
(8)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과다편성된 이자수입액 조정 필요 ..	46

기획재정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개 요

(1) 편성배경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첨단 기술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는 상황이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12.2조원으로 설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① 가용재원 발굴 4.1조원, ② 국채발행 8.1조원을 제시하고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조달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규모
① 가용재원 발굴*	4.1
② 국채발행	8.1
총 계	12.2

* 세계잉여금 0.2조원, 한은잉여금 1.2조원, 기금 여유자금 등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3.2조원은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하고, 4.4조원은 통상 및 AI 지원, 4.3조원은 민생 지원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단위: 조원)

중점 사업 내용	금액
① 재해·재난 대응	3.2
▪ 산불피해 복구(재해·재난대책비, 주택복구, 지방재정 보강) ▪ 재난대응력 강화 (AI 감시카메라 등 사전탐지체계, 산림헬기 등 진화역량) ▪ 예비비 보강 ▪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	1.4 0.3 1.4 0.2
② 통상 및 AI 지원	4.4
▪ 통상리스크 대응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 국내 AI 생태계 혁신 (고성능 GPU 확보, AI 개발역량 제고 및 인재 양성 등)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보조금 등)	2.1 1.8 0.5
③ 민생 지원	4.3
▪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부담경감 크레딧, 무이자 신용카드, 정책자금 등) ▪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상생페이백, 공공배달앱, 취약상권 환급 등)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채불임금 대지급, 최저신용자 및 청년·대학생 정책자금 등)	2.6 1.6 0.2
총 계	12.2

자료: 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당초 463조 8,148억 원 대비 8조 4,830억원(1.8%) 증가한 472조 2,977억원임.

세외수입 중 추정 지출소요에 따른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증액 7조 154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 2,491억원, 세계잉여금이 2,184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확정예산 (A)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일반회계	463,814,777	472,297,735	8,482,958	1.8
○ 세외수입	92,009,777	100,492,735	8,482,958	9.2
- 한국은행잉여금	4,200,003	5,449,101	1,249,098	29.7
- 기금예수금	82,765,297	89,780,718	7,015,421	8.5
- 전년도세계잉여금	-	218,439	218,439	순증

주 : 총계기준 / 자료 : 기획재정부

(2)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 36조 4,791억 원보다 1조 8,916억원(5.2%) 증가한 38조 3,708억원임.

세출예산안에서는 ①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원, 예비비 1.4조원으로 1조 6,000억원을 증액하였고, ②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받은 자금의 이자상환으로 1,513억, 추경대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 세입 부족분 지원으로 1,403억 증액하였음

[2025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확정예산 (A)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3236-302)	100,000	300,000	200,000	2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28,992,437	29,132,745	140,308	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8010-803)	4,986,707	5,138,035	151,328	3.0
예비비 (3069-300)	2,400,000	3,800,000	1,400,000	58.3
합계(추경 대상)	36,479,144	38,370,780	1,891,636	5.2
총계(전체)	40,931,020	42,822,656	1,891,636	4.6

주 : 총계기준 / 자료 : 기획재정부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당초 13조 9,089억원 대비 3,078억원(2.2%) 증가한 14조 2,167억원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대비 ① 일반회계 전입금(지역지원계정)이 1,513억원 증액되고, ② 특별회계전입금(지역지원계정)이 1,565억원 증액됨.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확정예산 (A)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세 입	139,089	142,167	3,078	2.2
○ 지역자율계정	32,132	32,132	-	-
○ 지역지원계정	103,222	106,300	3,078	3.0
- 주세 등	22,234	22,234	-	-
- 일반회계 전입금	49,867	51,380	1,513	3.0
- 특별회계 전입금	31,121	32,686	1,565	5.0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3,163	3,163	-	-
○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572	572	-	-

주: 총계기준 / 자료: 기획재정부

(4)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추경안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기존의 304조 8,300억원에서 8조 2,605억원(2.7%) 증가한 313조 905억원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의 수입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① 국공채발행수입이 8조 985억원, ②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이 1,403억원, ③ 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이 60억원, ④ 기금 예탁이자수입이 117억원, ⑤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이 40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확정예산 (A)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괄 계 정	국공채발행수입	1,975,525	2,056,510	80,985	4.1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	289,924	291,327	1,403	0.5
	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3,134	3,194	60	1.9
	기금 예탁이자수입	69,502	69,619	117	0.2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1,448	1,488	40	2.8
	합계(총괄계정 전체)	3,045,645	3,128,250	82,605	2.7
융자계정		2,655	2,655	-	-
차관계정		-	-	-	-
합계(전체)		3,048,300	3,130,905	82,605	2.7

주 : 총계 / 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① 일반회계 예탁이 7조 154억원, ② 특별회계 예탁이 2,984억원, ③ 기타기금 예탁이 5,847억원, ④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이 1,620억원, ⑤ 지방채 인수(융자)가 2,000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확정예산 (A)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괄 계 정	일반회계 예탁	827,653	897,807	70,154	8.5
	특별회계 예탁	27,662	30,646	2,984	10.8
	기타기금 예탁	444,772	450,619	5,847	1.3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 포함)	299,779	301,399	1,620	0.5
	지방채 인수(융자)	100	2,100	2,000	2,000.0
	합계(총괄계정 전체)	3,045,645	3,128,250	82,605	2.7
융자계정		2,655	2,655	-	-
차관계정		-	-	-	-
합계(전체)		3,048,300	3,130,905	82,605	2.7

주 : 총계기준 / 자료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잔액은 제1회 추경 기준 839조 4,930억원에서 7조 154억원 증가한 846조 5,08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 규모는 1,273.3조원에서 1,279.4조원으로 6.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추경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 잔액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확정 예산	추경
						제1회(안)
발행	882,000	862,000	554,413	966,383	827,653	897,807
원금상환	25,732	35,550	11,414	-	-	-
이자상환	90,049	104,558	59,056	181,486	289,924	291,327
잔액	5,231,445	6,057,894	6,600,894	7,567,277	8,394,930	8,465,084

자료: 기획재정부

[추경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화]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증감 (B-A)
		당초(A)	추경	
			제1회(안)(B)	
국가채무 (GDP 대비, %)	1,175.2 (46.1)	1,273.3 (48.1)	1,279.4 (48.4)	6.0

자료: 기획재정부

제1회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Delta 1.2\%$ 로 본예산($\Delta 0.8\%$) 기준 $\Delta 0.4\%p$ 악화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 로 본예산(48.1%) 보다 $0.3\%p$ 악화됨.

[추경예산안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확정예산 대비 (B-A)
		확정예산 (A)	추경	
			제1회(안)(B)	
I. 총수입	594.5	651.6	652.8	1.3
II. 총지출	638.0	673.3	685.5	12.2
III.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43.5$ ($\Delta 1.7$)	$\Delta 21.7$ ($\Delta 0.8$)	$\Delta 32.6$ ($\Delta 1.2$)	$\Delta 10.9$ ($\Delta 0.4\%P$)
IV.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104.8$ ($\Delta 4.1$)	$\Delta 73.9$ ($\Delta 2.8$)	$\Delta 84.7$ ($\Delta 3.2$)	$\Delta 10.9$ ($\Delta 0.4\%P$)
V. 국가채무 (GDP 대비, %)	1,175.2 (46.1)	1,273.3 (48.1)	1,279.4 (48.4)	6.0 ($+0.3\%P$)

자료: 기획재정부

(5)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제1회 추경안에 따른 복권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기존의 8조 8,685억 원에서 변동 없음.

복권기금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안 대비 ①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가 150억원 감액되었고, ②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이 150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복권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확정예산 (A)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553	1,403	△150	△9.7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306	456	150	49.0
합계(추경 대상)	1,859	1,859	-	-
합계(전체)	88,685	88,685	-	-

주 : 총계기준 / 자료 : 기획재정부

3.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검토

< 현 황 >

정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대응,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지원,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2.2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에 두 차례 7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약 3년만에 편성·제출된 것임.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편성배경	주요내용	규 모
2020년도 (소계: 66.8)			
제1회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및 직·간접적 피해 대응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 보전 - 중가·소상공·민생·고용안전 및 지역경제 회복	11.7
제2회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 진작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2.2
제3회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 - 한국판 뉴딜사업 -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조치	35.1
제4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집중계층 지원	- 긴급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패키지 - 긴급 생계지원·돌봄 및 방역지원 패키지	7.8
2021년도 (소계: 49.8)			
제1회	코로나19 방역상황 장기화 및 고용상황 악화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 긴급 고용대책 및 방역 대책	14.9
제2회	코로나19 피해·방역 지원 및 민생 회복 뒷받침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백신·방역 보강 - 고용·민생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34.9
2022년도 (소계: 78.9)			
제1회	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피해지원	- 소상공인 지원(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 방역 보강 및 예비비 보강	16.9
제2회	코로나19 피해·방역 지원 및 민생·물가안정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및 방역 보강 - 민생·물가안정 및 예비비 보강	62.0

< 검토의견 >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이 대규모 재해 발생에 해당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개별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국가재정법」 제89조¹⁾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을 ① 산불 피해복구 및 재난·재해대응 역량 강화 지원, ② 미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등 첨단산업 지원, ③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 중 대규모 재해 발생과 경기침체를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첫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12.2조원 중 3.2조원을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하였는데, 이번 산불 발생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산림청은 경북 지역 산불피해 규모가 9만 9,000여ha에 달하고, 경남·울산지역을 포함하면 10만 4,000ha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발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83명의 인명피해와 9,479개소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잠정 집계하였음.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산불 지역별 피해면적 규모(잠정)]

(단위: ha)

경북						경남			울산	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소계	산청	하동	소계		
28,853	26,709	20,655	6,864	16,208	99,289	2,403	994	3,397	1,190	103,876

자료: 산림청 보도자료(2025. 4. 18.)를 토대로 작성

[산불 인명 및 시설 피해 규모(잠정)]

(2025. 4. 17. 기준)

구분		피해규모(명, 개소)	비고
인명		83	사망 31 / 중상 9 / 경상 43
시설	계	9,479	
	주택	4,462	전소 3,522 / 반소 394 / 부분소 546
	농업시설	4,247	
	국가유산	35	전소 12
	기타	735	

자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이와 같이 이번 산불의 피해면적이 서울면적의 1.7배 이상으로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재난성 산불 중 최대규모였던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면적(23,794ha)의 4배 이상에 달하며,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및 시설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인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2025. 4. 18. 국무회의 의결)에는 산불로 인한 정확한 피해복구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점²⁾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재정 투입 소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 외에 재난·재해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도 추가경정

2) 4월 18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10만400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최종 피해 면적과 피해복구 소요는 추후 행정안전부, 산림청, 지자체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인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재해 피해복구가 아닌 향후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은 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사업별로 해당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산불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력 강화 사업 세부내역]

구분		규모	비고
산불피해 복구	재해·재난대책비	0.9조원	구호금, 생계비, 주택복구비 등
	주택 복구	0.2조원	신축 임대주택, 주택복구 저리대출 등
	지방재정 보강	0.2조원	
재난대응력 강화 등	사전탐지체계	68억원	AI 감시카메라, 산불 감시 드론 등
	진화 역량·인프라 강화	0.2조원	산림헬기, 다목적 산불진화차 등
	예비비	1.4조원	
	항공안전 강화	433억원	활주로 이탈방지장치 등
	노후 SOC 개량	0.1조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2025. 4. 18.)를 토대로 재작성

둘째, 추가경정예산안 12.2조원 중 8.7조원은 통상·AI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경기침체 또는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상호관세³⁾ 조치를 시작으로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도 0.2%P ~ 0.8%P 하향 조정되어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5% ~ 2.0%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3) 모든 국가에 단일세율 10%를 적용하되, 對美 무역수지 등을 감안하여 57개국에 대해 추가로 차등 부과

국가별 상호관세율 비교

한국	중국	베트남	독일(EU)	대만	일본
25%	34% (145%로 상향)	46%	20%	32%	2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현황]

(단위: %, %p)

구 분	기존 전망치	시점	수정 전망치	시점	변동폭
정부	2.6	'24.7	1.8	'25.1	△0.8
한국은행	2.2	'24.11	1.5	'25.2	△0.7
KDI	2.2	'24.11	1.6	'25.2	△0.6
IMF	2.2	'24.11	2.0	'25.1	△0.2
OECD	2.3	'24.12	1.5	'25.3	△0.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최근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여건도 악화되면서 1/4분기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음.⁴⁾

[2025년 1/4분기 국내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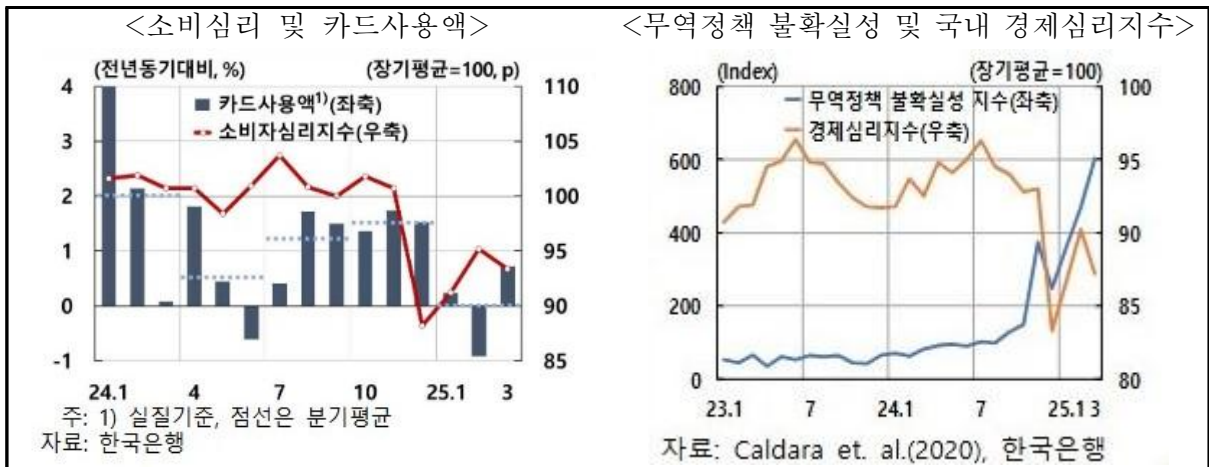
(전기대비, %)	2023	2024					2025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GDP 성장률	1.4	2.0	1.3	-0.2	0.1	0.1	..	-	-	-
소매판매액 (전년동기대비)	-1.3	-2.1	-2.2 (-1.6)	-0.3 (-3.1)	0.7 (-1.5)	-0.4 (-2.0)	..	-0.7 (0.0)	1.5 (-2.3)	..
설비투자지수 (전년동기대비)	-4.8	2.9	-1.5 (-1.4)	-1.4 (-3.3)	10.2 (11.5)	-1.8 (5.3)	..	-15.7 (-5.1)	18.7 (7.7)	..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7.8	-4.7	7.7 (4.0)	-8.2 (-3.1)	-3.8 (-9.1)	-5.1 (-9.7)	..	-4.6 (-27.4)	1.5 (-21.0)	..
통관수출(억\$) (전년동기대비)	6,322 (-7.5)	6,836 (8.1)	1,633 (8.0)	1,715 (10.1)	1,736 (10.5)	1,751 (4.2)	1,598 (-2.1)	492 (-10.1)	524 (0.7)	582 (3.0)
통관수입(억\$) (전년동기대비)	6,426 (-12.1)	6,318 (-1.7)	1,548 (-11.1)	1,570 (-1.4)	1,600 (6.2)	1,599 (0.9)	1,526 (-1.4)	510 (-6.4)	483 (0.1)	533 (2.3)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관세청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경제상황 평가」, 2025. 4. 17.

4) 한국은행, 「보도자료: 경제상황 평가」, 2025. 4. 17.

[소비심리·카드사용액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국내경제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경제상황 평가」, 2025. 4. 17.

이처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방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인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하면, 지난 3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⁵⁾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피해규모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및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이 신속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의 제도적 취지를 바탕으로 시급성·한시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한국은행 잉여금·전년도 세계잉여금

< 현 황 >

한국은행 잉여금은 「한국은행법」 제99조⁶⁾에 따라 결산상 순이익금을 처분한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는 금액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한국은행 잉여금은 4조 2,000억 300만원 대비 1조 2,490억 9,800만원(29.7%)이 증가한 5조 4,49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⁷⁾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채무 상환에 사용한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는 금액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2,184억 3,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국은행잉여금·전년도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 감	
	예산	수납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한국은행잉여금	1,630,000	922,062	4,200,003	5,449,101	1,249,098	29.7
전년도세계잉여금	-	-	-	218,439	218,439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 6)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7)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한국은행 잉여금 및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는 한국은행 잉여금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 잉여금은 본예산 편성 시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 전망에 기반하여 법정적립금 30%를 제외한 70%로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되며, 실제 납입 규모는 한국은행 결산 후 확정되어 세입조치됨.

2024년 한국은행 세후 당기순이익 7조 818,9억 2,600만원 중 법정적립금 30%(2조 345,6억 7,800만원)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을 위한 임의적립금 24억 1,700만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인 5조 4,491억 100만원을 2025년도 정부세입으로 납부하였음. 이 과정에서 당초 추정치에 기반한 2025년도 본예산 4조 2,000억 300만원보다 증액된 1조 2,490억 9,800만원을 추경안에 새롭게 편성한 것임.

또한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458억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1,337억원 출연하고, 국가채무에 936억원 출연한 나머지 금액인 약 2,185억원을 추경안에 새롭게 편성한 것임.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자기금 국고채 발행(8.1조원), 한국은행 잉여금(1.2조원), 전년도 세계잉여금(0.2조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채권발행(0.7조원), 기금여유자금 활용(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5조원, 주택도시기금 0.2조원 등)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한국은행 잉여금은 한국은행 결산이 종료된 금년 2월 말 시점에 이미 정부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된 금액으로, 본예산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불과함. 또한, 전년도 세계잉여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⁸⁾에 따라 정부에 세입조치되는 금액이므로 세입조치되는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8)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노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은행 잉여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 중 2025년을 포함하여 잉여금 오차 규모가 1조를 상회한 것이 두 차례나 발생하고 있으며, 오차율 또한 18.9~43.4%에 달하는 상황임. 이러한 한국은행 잉여금의 오차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전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기순이익 규모를 보다 면밀히 예측하고 본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동 세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잉여금 오차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A)	정수결정액(B)	오차(C= B-A)	오차율(C/A)
2021	4,306,100	5,121,987	815,887	18.9
2022	4,031,469	5,478,077	1,446,608	35.9
2023	1,272,464	1,754,625	482,161	37.9
2024	1,630,000	922,062	707,938	43.4
2025	4,200,003	5,449,101	1,249,098	29.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예비비 증액의 적절성 검토 필요

< 현 황 >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2조 4,000억원 대비 1조 4,000억원(58.3%)이 증가한 3조 8,000억원으로, 일반예비비는 당초 0.8조원 대비 0.4조원(50.0%) 증액된 1.2조원이, 목적예비비는 당초 1.6조원 대비 1.0조원(62.5%) 증액된 2.6조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 감	
	예산	집행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예비비	4,200,000	1,638,000	2,400,000	3,800,000	1,400,000	58.3
-일반예비비	2,000,000	1,079,600	800,000	1,200,000	400,000	50.0
-목적예비비	2,200,000	558,400	1,600,000	2,600,000	1,000,000	62.5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예비비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적정규모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 재난·재해대책비가 개별 부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추경안에 상당 규모의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025년도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첫째,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적정 규모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예산과 달리 총액으로만 의결하고 세부 내역에 대하여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인 제도임. 이처럼 예비비는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의 재량이 크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이므로 적정 규모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의 경우 목적예비비와 달리 예비비 집행의 목적 및 용도 제한마저 없는 상황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더 큰 특징이 있음.

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본예산 및 예비비로는 충당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 하에¹⁰⁾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추경 예산사업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 후 예산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재정편성 및 운용방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4조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4.8조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3.2%) 대비 예비비 증가율(14.3%)이 과도하게 높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4조원이 감액된 2.4조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58.3%로, 여전히 추경안으로 인한 총지출 증가율¹¹⁾(1.8%)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10)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총량 변화]

한편,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2024년 예비비 역시 예산 4.2조원 중 집행액은 1조 6,380억원에 그쳐 집행률이 3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A)	56,100	97,000	55,000	46,000	42,000
집행(B)	54,467	92,721	47,049	13,091	16,380
집행률(B/A)	97.1	95.6	85.5	28.5	39.0

주: 예산은 각 연도 마지막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재난·재해대책에 대하여 개별 부처 사업으로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안을 통하여 증액될 예정이라는 점,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추가적 증액 규모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추경안 중 예비비를 1.4조원(일반예비비 0.4조원, 목적예비비 1.0조원) 증액 편성하면서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보강하였다고 발표¹²⁾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재난·재해대책비는 개별 부처의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상당 규모 증액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개별 부처의 재난·재해대책 사업 예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총수입	612.2	651.6	652.8	1.3	0.2
총지출	656.6	673.3	685.5	12.3	1.8

자료: 기획재정부

12)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기획재정부, 2025.4.

산은 총 9,270억 2,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들이 총 9,460억원(102.0%)이 추가로 증액 편성되어 총 1조 8,730억 2,000만원이 개별 부처의 재난·재해대책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이에 따라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3월말 기준 집행액을 제외한 재난·재해대책비 가용재원은 1조 3,536억 4,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개별 부처의 재난·재해대책비 집행 및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5년 예산			집행액(C)	추경안 가용재원 (B-C)
		본예산(A)	추경안(B)	증가(B-A)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20	1,020,020	660,000	243,071	776,949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00	274,000	174,000	78,542	195,458
환경부	재해대책비	50,000	162,000	112,000	26,442	135,558
	하천재해대책비	232,000	232,000	0	163,942	68,058
해수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25,000	25,000	0	4,719	20,281
농림부	재해대책비	160,000	160,000	0	2,658	157,342
합계		927,020	1,873,020	946,000	519,374	1,353,646

주: 집행액은 2025년 3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2025년 본예산에는 「국가재정법」 제25조제2항¹³⁾에 따른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도 1.5조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 3월말 기준 국고채무 부담행위 집행액은 없는 상황임.

이처럼 이번 추경안에 개별 부처의 재난·재해대책 예산이 총 9,460억원 증액되었으며, 추경안에 따른 3월말 기준 가용재원이 2025년 본예산 규모보다 크다는 점,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도 2025년 4월 기준 1.5조원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재해대책을 위하여 추가로 목적예비비 1조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가 예비비 증액 사유를 재난·재해대책으로 제시한 만큼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를 대략적으로 구체화하여 개별 부처 사업

13)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예산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예비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제출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 증액이 적정한지 그 추가적인 소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대하여 배정 부처 및 사업, 배정 사유 및 집행내역 등 그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55조¹⁴⁾ 및 「국가재정법」 제52조¹⁵⁾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55조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며,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의 국회 제출 및 승인 의무를 명시한 규정으로, 동 규정들이 예비비 지출 내역을 당해 연도에 제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실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당해 연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을 공개한 바 있음.

14)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0년 당시 정부가 공개한 당해연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억원)

배정일	배정내역	배정규모
2.18.	방역대응체계 운영	42
	검역·진단 지원	203
	격리·치료 지원	313
	방역·홍보 지원	294
	지원·보상 등	163
	귀국 국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27
	합계	1,041
2.25.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교육부)	42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인사혁신처)	9
	합계	50
3.3.	대구·경북(청도) 방역체계 구축 및 마스크 생산지원	339
	가정내 돌봄 부담 완화, 학교 안전 강화	432
	합계	771
3.10.	검역·검사비용	332
	격리·치료비	1,296
	방역물품 지원	382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	5,186
	방역대응체계 운영	63
	합계	7,259
3.31.	국회의원선거 방역대책 지원	176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 고용보조금 지원	16
	합계	191
5.1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45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16)에서 규정하듯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일 뿐, 그 집행에 있어서 기밀성을 요하는 예산이 아님.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이 아닌 집행과정에서 그 내역공개에 대하여 일반예산과 다르게 특례를 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예비비의 배정 및 집행 세부내역 제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서는 사후 승인에 관한 의무만 규정할 뿐 당해 연도에 집행 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정부가 세부내역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점, 예비비는 기밀성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1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을 조속히 제출하여 예비비 증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BIS 비율 및 손실률을 고려한 적정 출자규모 검토 필요

< 현 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예산은 1,000억원 대비 2,000억원(200.0%)이 증가한 3,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이 공급하는 정책 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려는 것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 감	
	예산	집행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금융시장 안정화)	-	-	100,000	300,000	200,000	200.0

자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은 미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등에 위기 대응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①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신설(6조원), ②대-중소기업 상생 지원(3조원), ③수출다변화 지원 프로그램 신규추진(1조원)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임.

[수출입은행 위기 대응자금 10조원 공급 계획]

①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신설: 6조원

구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규모	3조원	3조원
대상	첨단·혁신산업, 철강·석화 등 위기주력산업, 수출다변화 기업, 新통상·무역질서 피해 기업 등	
주요 내용	1) 금리인하 최대 2.0%p 2) 신용등급 하락에도 추가가산금리 미부과 3) 통상대응, 시장개척, ESG대응 컨설팅 등	수출실적 기반의 수출성장자금 지원

②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3조원

- (대상) 해외 진출 대기업에 납품 또는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요내용) 금리차감 확대 : 최대 0.3 → 1.0%p

③ 수출다변화 지원 프로그램 신규추진: 1조원

- (대상)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다변화 추진 기업 등
- (주요내용) 대출금리 : 최대 $\Delta 0.4\%p$, 대출한도 : 최대 +10%p

추경안의 증액규모는 추가자금 공급규모 10조원에 예상손실률 4.1%¹⁷⁾와 정부분담 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음.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 추경안 산출 근거]

○ 추경안 산출근거

- 추가 자금 공급목표 10조원 × 손실률 4.1%* × 정부 분담 50% = 2,000억원¹⁸⁾
- * 2024년도 총당금 적립률

< 검토의견 >

첫째, 추경안에 편성된 출자금이 출자된 이후에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자체관리목표를 상회하여 계획된 자금 공급규모 이상의 추가적인 자금공급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출자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출입은행의 자체 BIS 비율 관리목표는 13.0%인데,¹⁹⁾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말 기준 15.35%임. 이는 자체 BIS 비율 관리목표를 2.35%p 상회하는 수준임.

[최근 5년 수출입은행 BIS 비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당초	수정 (10조원 추가 공급)
BIS자기자본(A)	169,727	175,021	200,102	235,796	238,150	238,150
위험가중자산(B)	1,144,007	1,308,231	1,382,604	1,535,974	1,592,400	1,600,959
BIS 비율(A/B)	14.84	13.38	14.47	15.35	14.96	14.88
2,000억원 출자 시 BIS 비율	-	-	-	-	-	15.00

자료: 수출입은행

17) 예상 손실률은 수출입은행의 2024년도 총당금 적립률 4.1%가 적용되었음

18) 손실률 4.1%와 정부 분담비율 50%를 적용하는 경우 필요 출자금은 2,050억원인데, 정부는 추경안에 2,000억원을 편성하였음

19)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①최소 규제비율 8%에 ②자본보전완충자본을 2.5%, ③경기대응완충자본을 최대 2.5%까지 추가 적립하도록 규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음.

- ① + ② + ③ = 최대 13%

당초 2025년 업무계획²⁰⁾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2025년 말 기준 BIS 비율은 14.96%로 전망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위기 대응자금 10조원을 공급하는 경우 2025년 말 기준 BIS 비율은 14.88%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추정안과 같이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2025년 말 기준 BIS 비율은 15.00%까지 상승하여 자체관리목표를 2.00%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2025년 업무계획에서 전망했던 BIS 비율 14.96%보다도 0.04%p 높은 수준임.

또한,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2024년 말 기준 BIS 비율이 13.90%인데, 같은 시점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산업은행보다 1.45%p 이상 높은 15.35%임. 즉,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유사 정책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BIS 비율이 15.00%까지 높아지도록 자금공급 확대에 따른 BIS 비율 하락분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가 필요함.

둘째, 손실 보전을 위한 수출입은행 출자 규모는 손실률 4.1%가 적용되어 산출되었는데, 실제 손실률은 더 낮을 수 있으므로 적정 출자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정안 예산액 산출에 적용된 손실률 4.1%는 수출입은행의 2024년 충당금 적립률²¹⁾임. 그런데 최근 5년 간 수출입은행의 충당금 적립률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경제 불안정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21년과 2023년 사이 충당금 적립률은 3.4%~3.9%이며, 이는 예산액 산출에 적용된 손실률 4.1% 보다 낮은 수치임.

[최근 수출입은행 충당금 적립률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월
대손충당금 (A)	27,973	33,192	28,978	29,485	31,886	38,220	36,634
익스포저 (B)	712,317	693,592	745,998	858,434	824,229	927,687	922,432
충당금 적립률 (A/B)	3.9	4.8	3.9	3.4	3.9	4.1	4.0

자료: 수출입은행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1조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수출입은행의 2025년도 업무계획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충당금 적립률 = 대손충당금 ÷ 수출입은행 익스포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당금 적립률은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대 러시아 국제 제재조치로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대출 연체가 늘어났으며, 총당금 적립률이 높은 조선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특이사례로 인하여 대손충당금과 총당금 적립률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이후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024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25년 2월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4.0%로서 2024년 말에 비해 $\Delta 0.1\%p$ 감소하였음. 또한, 2021년에서 2024년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²²⁾과 연체대출비율²³⁾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수출입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대체비율 현황]

연 도	2021	2022	2023	2024
고정이하여신비율	1.72%	1.12%	1.00%	0.96%
연체대출비율	1.39%	0.79%	0.40%	0.40%

자료: 수출입은행

위와 같은 이유로 위기 대응자금 10조원 공급에 따른 실제 손실률이 2024년도 총당금 적립률(4.1%)보다 낮은 2021년과 2023년 사이 총당금 적립률(3.4%~3.9%)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 적정 출자 규모는 1,700억원~1,950억원으로서 추경안에 편성된 출자 규모 2,000억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손실률에 따른 적정 출자금 산출 내역]

손실률	적정 출자금	계산식	비고
4.1% (2024년 총당금 적립률)	2,050억원*	10조원 × 손실률 4.1% × 정부분담 비율 50%	추경안 산출 시 적용된 손실률
3.9% (2021년, 2023년 총당금 적립률)	1,950억원	10조원 × 손실률 3.9% × 정부분담 비율 50%	
3.4% (2022년 총당금 적립률)	1,700억원	10조원 × 손실률 3.4% × 정부분담 비율 50%	

* 기획재정부는 손실률 4.1%를 적용하고, 추경안에 출자금 2,000억원 편성

22) 은행이 보유한 전체 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회수가 어려운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

23) 특정 시점에 연체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따라서, 대내외 특이사항으로 충당금 적립률이 가장 높았던 2024년 사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최근 충당금 적립률의 평균 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셋째, 출자금 산출을 위한 손실률에 대한 지표로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부실 여신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금융회사의 신용 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임. 그런데 금융기관이 신용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여신 공급에 따른 실제 손실률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비해 낮게 나타날 수 있음. 이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활용하여 손실 보전을 위한 출자금을 편성하면 필요한 출자금에 비해 과다편성될 우려가 있음.

이를 고려하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실제 발생 손실률을 적용하여 출자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재 수출입은행은 과거 손실률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활용하여 출자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실제 손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손실률에 대한 지표로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과거 손실률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여신 공급에 따른 손실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복권기금): 연례적 기금운용 계획 변경 지양 필요

< 현 황 >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24)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25)에 따라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에 기금을 배분함.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당초 계획액 대비 여유자금 중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액을 150억원 감액하였고,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에서 150억원을 증액하였음.

[복권기금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 주요사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당초 계획액 (A)	2025년 제1회 변경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30,640	45,640	15,000	49.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55,341	140,341	△ 15,000	△ 9.7
합계(추경대상)	185,981	185,981	-	-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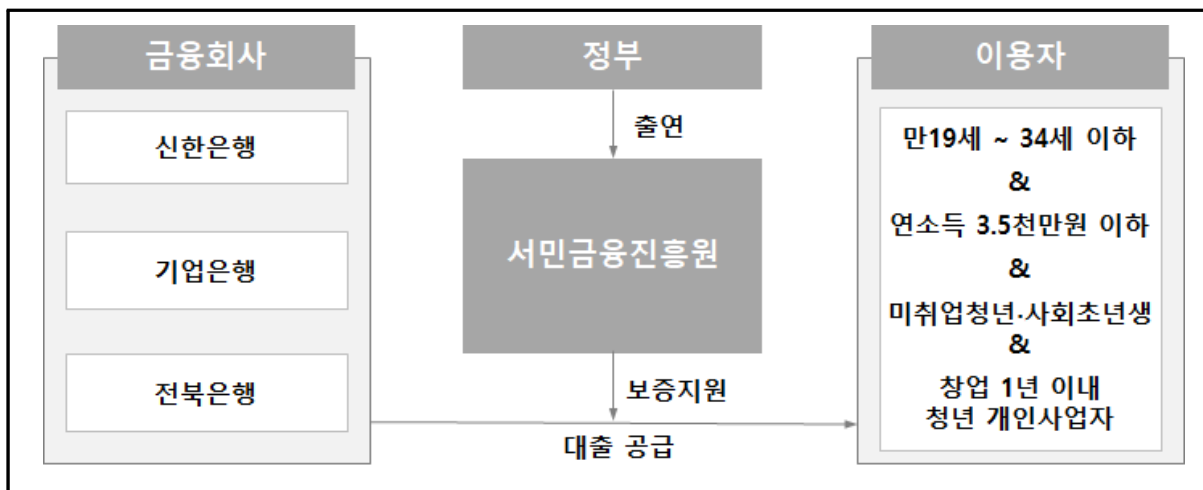
- 2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 검토의견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의 경우 2020년 사업 최초 시행 이후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지출 증액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시 합리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금액을 산출함으로써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²⁶⁾에 따라 실시하는 공익사업으로, 청년·대학생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건전한 신용생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시중은행을 통해 ‘햇살론유스’ 대출상품을 청년층에게 제공하되,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상환을 보증하고 정부가 이러한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발생 시 진흥원이 입는 손실을 예측하여 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구조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 집행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햇살론유스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또는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수요 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2020년 신규 출시되었음.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햇살론유스 개요]

구 분	내용
개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향후 제도권금융 정착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2020년 1월 출시)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지원금액	동일인 기준 최대 1,200만원 이내에서 용도에 따라 지원 ○ 일반생활자금: 별도의 용도 증빙없이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 지원 ○ 특정용도자금: 용도(학업·취업준비·의료·주거) 증빙 시 연간 900만원 이내에서 필요자금만큼 지원
대출금리	연 4.5%(은행금리 3.5%, 보증료율 1%) ※ 사회적 배려대상자 3.6%(은행금리 3.5%, 보증료율 0.1%)
상환방식	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8년)

* 기존엔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4.10.31.부터 청년사업자도 추가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5년 본계획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햇살론유스 대출상품의 2,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출연금 30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① 서민금융진흥원이 시중은행에 햇살론유스 대출상품에 대하여 100% 상환을 보증하고 이에 대한 대위변제율을 15%로 예측한 보증재원 300억원, ②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²⁷⁾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 지원 재원 6억 4,000만원을 더하여 산정한 것임.

구분	본계획	변경안
금액	306.4억원	456.4억원
산출내역	① 보증재원 300억원 = 목표대출액 2,000억원 × 100%(보증비율) × 15%(예상대위변제율) ²⁸⁾	① 보증재원 450억원 = 목표대출액 3,000억원 × 100%(보증비율) × 15%(예상대위변제율)
	② 이차보전 재원 6.4억원 = 목표대출액 2,000억원 × 20%(사회적 배려자 비중) × 1.6%p(이차보전율)	② 이차보전 재원 6.4억원 = 목표대출액 3,000억원 × 20%(사회적 배려자 비중) × 1.6%p(이차보전율) × 2/3 *

* 이차보전 시행시기('25.6월 잠정) 고려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기획재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내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대학생·청년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출연금을 150억원 증액하여 햇살론유스의 대출공급 목표액을 본계획 2,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²⁹⁾ 대출공급규모를 1,000억원 확대할 경우, 햇살론유스(일반생활자금) 1회당 대출한도액이 300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약 33,330건의 대출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임.

2025년 3월까지 햇살론유스 상품의 대출실적은 575억원으로, 이미 기존 목표대출액 2,000억원의 29%를 달성하여 현 추세대로라면 연중 목표대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 취급은행이 현행 3개에서 4개가 추가되어 7개³⁰⁾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대출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올해 6월부터 이차보전 지원 실시로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경우 상환부담 완화³¹⁾로 대출 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대출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있어 보임.

[2025년 햇살론유스 대출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누계
금액(억원)	201	185	189	575
건수*	7,183	6,544	6,733	20,460

* 1명이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번 대출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받은 인원은 건수보다 적음.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최근 저성장 기조 속 청년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³²⁾하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중·장년층에 비해 담보여력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³³⁾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³⁴⁾, 저리 대출

28) 대위변제율 = (구상채권발생금액-구상채권회수금액) / (보증공급금액)

29) 목표대출액이 1,000억원 증가했지만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3월 개정되어 이차보전 지원이 6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이차보전 재원은 증액 없이 동일하게 6.4억원으로 산출하였음.

30) 기업/신한/전북/광주/토스뱅크/제주/하나은행

3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햇살론유스 은행금리 1.6%p 이차보전 지원 → 최종 2.0%로 이용 가능

32) - 청년층(15~29세) 고용률 44.5%(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청년층(15~29세) 실업률 7.5%(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 출처 : 통계청, '2025년 3월 고용동향(2025.4.9.)')

33) 연령별 신용대출 증감율(% , '21년 대비 '24년) : (20대)△26.9 (30대)△23.5 (40대)△9.9 (50대)+0.7 (60대)+14.8

(※ 출처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25.2.28일 발표)')

3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4.8조원 규모 서민 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2025.2.28.),

을 통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햇살론유스 출시 첫 해인 2020년부터 반복적이고 연례적으로 추경 및 기금운용 계획 자체 변경을 통하여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 지출을 증액하고 있음. 매년 반복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2020년~2025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 증액(예정) 현황]

연도	계획액		증감 (B-A)	비고
	당초(A)	수정(B)		
2020년	150억원	300억원	150억원	• 3회 추경(6월) 시 증액
2021년	200억원	590억원	390억원	•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으로 증액 - 2월(설 민생대책): 150억원 증액 - 8월(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50억원 증액 - 12월(소상공인등 민생안정 대책): 90억원 증액
2022년	210억원	360억원	150억원	• 2회 추경(5월) 시 증액
2023년	150억원	450억원	300억원	•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 4월(기금운용계획 변경): 150억원 증액 - 9월(추석 민생안정대책): 150억원 증액
2024년	150억원	450억원	300억원	•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 5월(기금운용계획 변경): 150억원 증액 - 10월(추석 민생안정대책): 150억원 증액
2025년 (예정)	306억원	456억원	150억원	• 1회 추경(4월) 시 증액 요청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햇살론유스 상품은 대출을 한도액까지 이용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동일인 기준 1회만 부여하는 상품으로,³⁵⁾ 기금운용계획의 연례적 과소편성과 빈번한 증액은 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코노미스트, “불법 사금융, ‘사후단속’ 아닌 ‘사전예방’이 답이다”(2025.3.31.) 등
35)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상품소개에서도 “햇살론유스는 동일인에게 1천2백만원의 한도를 1회만 부여하는 상품으로 동 자금이 현재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천2백만원을 대출받은 뒤 동 금액을 다 갚아도 다시 쓸 수 없음)”라고 유의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한 사업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에서의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증액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향후 보다 정확하게 기금운용을 계획함으로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국고채 이자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과다편성된 예산안 감액 필요

< 현 황 >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액 29조 9,778억 9,800만원 대비 1,619억 7,000만원(0.5%) 증액된 30조 1,398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고채 이자상환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 감	
	당초계획	수납	당초계획(A)	추경안(B)	(B-A)	(B-A)/A
국고채 이자상환	28,259,942	27,724,637	29,977,898	30,139,868	161,970	0.5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편성금리 및 이자지급기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액의 편성금리가 실제 1분기 조달금리에 비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어 1분기 신규발행금액에 대한 잔여재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안은 추경안 편성으로 인하여 8조 984억 9,900만원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함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가 국고채 발행분에 3%의 편성금리와 8개월분의 이자지급기간을 적용하여 계획안을 산출하였음.

[국고채 이자상환 추경안 편성 산출근거]

8,098,499백만원(추가 국고채 발행분) × 3%(편성금리) × 8/12(8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동 예산은 편성금리 및 이자지급기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문제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이자상환의 편성금리를 3%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동 이자율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2025년 3월 기준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2.65%이며, 최근 3개월 간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2.69%임. 특히 최근 국고채 월별 평균 조달금리는 2024년 상반기에 3.27~3.48%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2025년 3월에는 2.65%로 하락하는 추세임.

[최근 국고채 월별 평균 조달금리 현황]

(단위: %)

2024												20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3.27	3.36	3.35	3.40	3.48	3.30	3.15	2.89	2.93	2.93	2.90	2.59	2.72	2.69	2.65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최근 한국은행이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역성장 가능성을 전망³⁶⁾하면서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3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2.65%인 점, 최근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의 하락 추세 및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정된 3%의 편성금리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둘째, 국고채 신규발행 시기 및 이자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국고채 발행분 전체에 대하여 8개월의 이자지급기간을 산정한 것 역시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국고채 통합발행제도³⁷⁾에 따라 국고채의 신규 발행은 만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발행되며, 이자지급주기는 6개월로 고정되어 있음.³⁸⁾ 만기별 국고채 신규발행 횟수와

36) '한은마저 역성장 경고, 5월 성장률 하향·금리 인하 불가피', 연합뉴스, 2025.4.17.

37) 일정기간 내에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을 단일한 종목의 채권으로 취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2000년 5월부터 국고채를 통합발행하기 시작함

발행 월은 다음과 같음.

[만기별 국고채 신규발행 횟수 및 월]

만기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물가채
신규발행 횟수	연 2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연 1회	연 2회	격년 1회	격년 1회
신규발행 월	3월, 9월	6월, 12월	3월, 9월	6월, 12월	9월	3월, 9월	9월	6월

자료: 「국채백서 2023」, 기획재정부, 2024.3.

국고채의 이자는 6개월분에 대하여 표기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발행일이 2024년 12월 및 2025년 상반기로 표기된 것에 한해 당해연도에 이자가 지급됨.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약 8.1조원의 국고채 역시 만기물별로 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이자소요는 2024년 12월 및 2025년 상반기에 발행된 것으로 표기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2025년에 지급될 것임. 즉, 만기별 국고채 신규발행 월에 따르면 추경안에 편성된 8.1조원의 국고채 중 발행일이 2024년 12월로 표기되는 국고채의 경우 1년치 이자가 지급될 것이며, 발행일이 2025년 상반기로 표기되는 국고채의 경우 6개월분의 이자가, 발행일이 2025년 하반기로 표기되는 국고채의 경우 2025년 예산으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발행되는 국고채 전체분을 5월에 일괄하여 발행할 것이므로 발행일이 2024년 12월로 표기되는 3년물, 10년물³⁹⁾ 등에 대한 이자 1년치와 2025년 3월로 표기되는 2년물, 5년물 등에 대한 이자 6개월치를 나누어 분배함에 따라 8개월의 이자지급기간을 산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추가로 발행되는 국고채는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있을 때에 발행하는 것이 그 이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할 것이며,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월별로 균등하게 발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실제 기획재정부도 2025년 동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안을 편성할 당시 신규 국고채 발행액에 대하여 월별 균등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자지급기간을 6개월로 산정

38) 「국채백서 2023」, 기획재정부, 2024.3.

39) 발행일이 6월과 12월로 표기되는 3년물이나 10년물의 경우 2025년 5월에 실제 발행되는 경우 2025년 6월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직전 신규발행 시점인 2024년 12월로 발행일이 표기됨

하였음.

[국고채 이자상환 2025년 당초 계획안 편성 산출근거]

$$(기\ 국고채\ 잔액 \times 해당\ 금리) + (신규발행금액 \times 3.4\% \times \underline{6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당초 계획액 편성 시 전제로 한 것과 같이 추경안으로 신규발행되는 국고채 역시 월별로 균등하여 발행될 경우 2025년 하반기로 발행일이 표기되는 국고채의 경우 이자가 2025년 예산으로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이자 소요비용에 비해 실제 소요는 적어질 것으로 보임.

이처럼 추가로 발행되는 국고채 전부를 5월에 일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계산한 동 사업의 추경 계획안은 기획재정부가 당초 계획안 편성 당시 국고채의 월별 균등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집행 상황을 고려한 월별 균등발행이 타당하다는 점,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과 같이 국고채 추가분의 균등 발행을 전제로 할 경우 필요한 이자소요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과다편성된 동 사업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 금리를 실제 2025년 1분기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1분기 신규발행금액 이자소요분에 대한 잔여 금액이 상당 규모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국고채 신규발행으로 인한 이자 소요액은 해당 잔여 금액에서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계획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분기에 발행한 국고채 신규발행금액은 60조 5,494억원이며 1분기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약 2.69%로, 각 월에 발행한 금액에 월별 평균 조달금리를 적용한 실제 이자소요액은 총 8,127억원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 조달금리를 3.4%로 실제 1분기 금리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액 기준 이자소요액 대비 실제 1분기 이자소요액 간에 2,16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임.

[2025년 국고채 월별 신규발행 실적 및 조달금리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1월	2월	3월	1분기 합계(A)	당초 계획안(B)	차이 (B-A)
국고채 발행금액	172,449	221,565	211,480	605,494		
평균 조달금리	2.72	2.69	2.65	2.69	3.40	0.71
이자소요액 (C=A×B×6개월)	2,345	2,980	2,802	8,127	10,293	2,16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동 사업은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 국고채 조달금리를 3.4%로 실제 평균 조달금리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함에 따라 1분기 신규발행금액에 대한 이자상환 계획액이 실제 소요액에 비해 남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액 산정 당시 평균 조달금리를 3.4%로 산정하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억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산출금리가 3.4%보다 낮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감액된 수준에 맞추어 역산할 경우 적용되는 당초 계획액 기준 산정 금리는 약 3.0% 수준으로 이 역시도 실제 1분기 조달금리에 비해 높은 상황임.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0%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도 당초 계획액 기준 이자소요액 대비 실제 이자소요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1분기만 하더라도 실제 95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추가 국고채 신규발행으로 인한 이자 소요액 중 일정 부분은 해당 금액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5년 국고채 월별 신규발행 실적 및 조달금리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1월	2월	3월	1분기 합계(A)	3.0% 금리 적용시(B)	차이 (B-A)
국고채 발행금액	172,449	221,565	211,480	605,494		
평균 조달금리	2.72	2.69	2.65	2.69	3.00	0.31
이자소요액 (C=A×B×6개월)	2,345	2,980	2,802	8,127	9,082	95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1분기에 실제 발생한 이자소요액과 당초 계획액 산정 시와의 금리 차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지방채 인수(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 면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추경안 편성 필요

< 현 황 >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사업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이 당초 계획액 100억 대비 2,000억원(2,000.0%) 증액된 2,1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 인수(융자)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 감	
	당초계획	수납	당초계획(A)	추경안(B)	(B-A)	(B-A)/A
지방채 인수(융자)	2,600,000	2,596,204	10,000	210,000	200,000	2000.0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없이 부실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의 추경계획안을 2,00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면서 그 산출 근거로 행정안전부 수요조사 결과 경상북도에서 2,000억원의 지방채 수요를 제출한 점을 제시하였음.

[지방채 인수(융자) 추경안 편성 산출근거]

행안부 수요조사 결과, 경상북도에서 2,000억원의 지방채 수요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수요조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실시된 것도 아니어서 면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요조사에 대한 별도의 공문이나 자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

며, 실제 경상북도에서 제출하였다는 지방채 인수 요청에 대한 내역이나 관련 공문조차 없는 상황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2,000억원이라는 금액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산출 피해 복구 예상소요비용이라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추계 내역 등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경상북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573억원인데,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해 인수하기로 배정받은 경상북도 지방채는 총 1,553억으로 경상북도가 제시한 2,000억원은 한도액에서 기배정받은 지방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산불 피해 복구 예상소요비용이라는 산출 근거 역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경상북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아직 없는 상황이며, 2025년 4월 기준 공자기금의 본 사업에 지방채를 인수 요청한 지자체 역시 없어 집행액도 0원인 상황으로, 기재부 및 행안부가 밝힌 경상북도 2,000억원의 지방채 인수 요청이 실제 동 사업의 수요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이처럼 동 사업은 면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실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획안이 부실하게 수립된 문제가 있으며, 계획안의 금액 역시 정확한 추계 없이 부실하게 산출된 문제가 있음.

(8)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과다편성된 이자수입액 조정 필요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이자 수입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이 당초 계획액 1,447억 8,900만원 대비 40억원(2.8%) 증액된 1,478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 감	
	당초계획	수납	당초계획(A)	추경안(B)	(B-A)	(B-A)/A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56,521	77,664	144,789	148,789	4,000	2.8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은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수납기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이하 ‘지자체이자수입’) 사업을 4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면서 그 산출근거로 지방채 신규 인수액인 2,000억원 전액에 대해 8개월의 이자수납기간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8개월의 이자수납기간에 대하여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임.

[지자체이자수입 추경안 편성 산출근거]

$$2,000\text{억원(지방채 인수(용자))} \times 3\%(\text{인수금리}) \times 8/12(8\text{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러한 8개월의 이자수납기간은 실제 수납가능한 이자수입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음.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계획액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가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채 인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채를 인수하는 과정을 거침. 이러한 수요조사 및 적정성 심사, 발행계획 수립 및 실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지방채 발행 과정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5월 초부터 이자수입이 수납될 것을 전제로 8개월의 이자수납기간을 적용하여 계획을 산출한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채 발행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액된 지방채 2,000억원이 전액 5월 초에 발행되어 인수할 것을 전제로 2,000억원 전액에 대하여 8개월의 이자수납을 산출한 바, 이는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수납액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임.

실제 2025년 당초 계획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은 지자체 신규인수금액에 대하여 이자 지급기간을 6개월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지방채 인수 요청 및 발행 시기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자지급기간을 6개월로 산출한 것으로 보임.

[지자체이자수입 2025년 당초 계획안 편성 산출근거]

$$(기\ 국고채\ 잔액 \times \text{해당}\ \text{금리}) + (\text{신규발행금액} \times 3.4\% \times \underline{6\text{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액 편성시와 달리 본 추경안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발행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인수 금액 전체에 대하여 8개월의 이자수납기간을 산출하여 실제 수납가능성에 비해 계획액을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의 계획안이 부실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동 계획안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역시 이에 맞추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임.